평창군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 안 번 호	178

제안연월일 : 2019. 11. .
제 안 자 : 평창군수

□ 제안이유

○ 현재 기간제 근로자 15명을 채용하여 직영하고 있으나 채용 후 2년이 되는 2020년에는 공무직으로 전환하여야 함에 따라 기준인건비등을 고려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임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제안근거

○「지방 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폐기물관리법」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의회의 동의)

□ 주요내용

1. 시설현황

○ 위　　치 : 평창군 미탄면 창리 1006번지 일원(환경센터내),
건축면적 1,159.01㎡

○ 총공사비/사업규모 : 4,000백만원 / 자원회수시설 10톤/일

○ 가동개시(2018. 3. 1.) / 운영현황(2019.1~8)

구분	재활용품 반입량	일처리량	재활용품 판매량	재활용품 판매실적	비고
수량	1,354톤 6.38톤/일	9.46톤/일	1,073톤 5.06톤/일	96,130천원 89,590원/톤	년간 150,000천원

* 공정 : 입고 ⇨ 야외선별 ⇨ 1차선별 ⇨ 자동선별 ⇨ 자력선별 ⇨ 광학선별 ⇨ 제품

2.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0년 3월 ~ 계속

○ 위탁시설 : 자동 및 수동선별시설, 비가림시설, 지게차1대

○ 위탁내용

-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관리, 유지보수, 재활용품 반입 선별 및 판매
- 선별잔재물의 운반 및 처리,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 재활용선별시설 적정인력

구 분	합계	선별	압축기 감용기	이송	관리직	기술직
인원수(명)	19	14	1	1	2	1

○ 위탁소요금액 : 년간 약1,026백만원(붙임1참조)

3. 관리방안의 장·단점 비교

직영 관리	장점	○ 책임감 있는 운영가능 ○ 시설 운영현황 파악용이 ○ 관리체계 변경으로 인한 부가업무 및 절차 불필요
	단점	○ 평창군 조직 인력 운영에 부담(전원 공무직 전환) ○ 호봉승급으로 인한 예산부담가중 ○ 지역 내 인력 수급 곤란 ○ 순환보직으로 인한 운영관리 미숙 및 시행착오 우려 ○ 별도의 감시.감독의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성 우려

위탁 관리	장점	○ 위탁기관의 기술과 전문 인력 확보 ○ 효율적 운영 및 초 고령사회 노인 일자리 창출 ○ 상대적인 조직 인력 감축 효과 ○ 민간부문 참여기회 확대 및 활성화
	단점	○ 공공성 저하 시설운영에 관한 지자체 개입 권한 제한 ○ 위탁기간 만료로 업체 변경 시 계속성 일부 결여 ○ 노사분규 및 수탁업체의 부도시 운영관리의 문제점 대두

4. 민간위탁의 필요성

○ 위탁비용과 직영운영비용은 비슷하지만 직영운영 시 우리군의 경우 공무직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어 기간경과에 따른 호봉승급과 노사협상에 의한 임금인상, 퇴직급여 등 예산부담 가중이 예상.

○ 현재 15명중 대부분 53세 이상이며 직영운영 시 공무직 전환이 불가능한 60세 이상 10명의 실직자 발생해소를 위해 현근로자 고용승계 및 지역주민 우선고용(설치지역)이 가능한 민간위탁으로의 대안 필요.

※ 민간위탁시 적정인원은 19명으로 산정되어 현인원에 추가로 4명을 고용할 수 있어 지역인력 고용창출 효과가 큼

○ 재활용선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타 지자체들도 위탁운영 도입

구분	시군명	특이사항
위탁 운영	춘천시, 원주시, 속초시, 횡성군, 홍천군, 인제군, 양양군	공공근로 인력과 일자리 인력으로 운영되다가 위탁으로 전환
직영 운영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화천군, 고성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양구군	영월은 재활용선별시설이 없고, 정선은 작년에 건설되어 아직 검토 하고 있지 않음

○ 재활용선별시설 업무는 행정적 업무실행이 필요치 아니한 반복적 피동적 단순노무업무(병, 캔, 플라스틱류, 고철류 등 수동선별)로 공공기관 직영보다 민간위탁 운영방안이 효율적.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위탁 운영 바람직

5. 주요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평창군의회) : 2019. 11.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및 적격 심사: 2020. 01.

○ 위탁 협약체결(공증) 및 인수·인계: 2020. 03.

【붙임 1】

직영 및 위탁운영비 총괄 원가산정 비교

(단위 : 원/년)

항목			직영운영	위탁운영	비고
			금액(원)	금액(원)	
고정비	노무비①	직접노무비	573,466,182	513,627,031	
		간접노무비	111,686,384	126,920,590	
		소계	685,152,566	640,547,621	
	관리비②	인적보험료	100,543,600	61,907,832	
		복리후생비	7,761,862	30,902,586	
		기타경비	23,898,119	21,237,926	
	소계		132,203,581	114,048,344	
	일반관리비③		81,735,614	66,178,555	(①+②)x10%
	이윤④		-	82,077,452	(①+②+③)x10%
	운영원가⑤		899,091,761	902,851,972	①+②+③+④
	부가가치세⑥		-	90,285,197	⑤x10%
	고정비합계⑦		899,091,761	993,137,169	⑤+⑥
변동비	시설관리비⑧	차량유지관리비	21,938,000	21,938,000	
		수리수선비	8,225,000	8,225,000	
		폐수처리비	-	-	
		소계	30,163,000	30,163,000	
	부가가치세⑨		-	3,016,300	⑧x10%
	시설관리비계⑩		30,163,000	33,179,300	⑧+⑨
연간총원가⑪			929,254,761	1,026,316,469	⑦+⑩

관계법령 발췌

□정부 조직법

관련 조항	관련 내용
제6조3항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	관련 내용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관련 조항	관련 내용
제11조 (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관련 조항	관련 내용
제4조 (대상사무)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2.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제1항의 대상사무는 군의 조사·검사·검정 등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업무로 구분한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노숙인 등 복지시설 2. 환경기초시설 3. 문화·관광·체육시설 4. 공원·녹지시설 5. 보건·건강증진시설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등 관련 시설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8. 그 밖에 1년 이상 위탁기간인 단순 행정관리 시설물**

□ 그 밖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민간위탁의 법률적 근거

관련 법률 및 조항	관련 내용
폐기물관리법 제62조 제3항 (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항 (권한·업무의 위임)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관련 법률 및 조항	관련 내용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위탁)	① 폐기물처리시설은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운영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제62조 및「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 또는 평창군 관내에 설립된 법인체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